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2조제5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중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진행 중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요양급여의 절차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요양급여의 절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</u> <u>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</u> <u>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</u> <u>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정보</u> <u>가 발령된 경우에는 법 제4조에</u> <u>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</u> <u>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</u> <u>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</u> <u>달리 정할 수 있다.</u>
제11조(행위·치료재료에 대한 요 양급여의 결정) ① 제10조에 따 라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 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 일부터 100일(「신의료기술평 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평가결과 고시 이후 30일) 이내 에 <u>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</u> <u>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</u> <u>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요</u> <u>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</u>	제11조(행위·치료재료에 대한 요 양급여의 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심의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행위·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한금액(이하 “상한금액”이라 한다)과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(이하 “선별급여”라 한다) 본인부담률(선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중 선별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함께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. ② ~ ⑩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08